

매우 제한된 상황 하에서 자녀, 부모 또는 부양 또는 청소년 사법 사건에서 법적 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항소 법원에 항소 또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청소년 법원이 내린 결정을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항소 법원에서 고려될 청소년 법원 사건 파일의 기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지의 목적은 아동,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지만 항소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이가 항소 또는 영장 도중에도 청소년 사건 파일의 특정 기록에 접근하려면 *Petition for Access to Juvenile Case File* (청소년 사건 파일 접근 청원서)(양식 JV-570)를 제출해야 한다는 요건을 알리는 것입니다.

① 언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까?

심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려면, 반드시 청소년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 부모, 법적 후견인, 카운티 복지부 또는 지방 검사만이 청소년 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거나 영장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또한 특정한 상황에서 아동과 관계가 있는 개인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항소를 제기하거나 영장 청원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친척 및 자녀가 자신의 집에서 퇴거하도록 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귀하가 자녀가 귀하와 함께 살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귀하의 해당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 사실상의 부모 상태를 요청했지만 거부된 사람;
- 섹션 388 청원 (양식 JV-180)을 통해 법원 명령 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된 사람; 또는
- 가정에서 자녀를 퇴거시키려는 청소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예비 입양 부모 또는 사실상의 부모.

② 이의를 제기하거나 청원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청소년 법원이 아직 귀하에게 청소년 사건 파일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항소 또는 영장 절차를 위해 그러한 기록에 접근하려면 청소년 법원에 접근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하려면 *Petition for Access to Juvenile Case File* (청소년 사건 파일 접근 청원서)(양식 JV-570)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려면

Notice of Petition for Access to Juvenile Case File (청소년 사건 파일 접근 청원 통지서)(양식 JV-571)를 사용하십시오. 자녀, 부모, 사회 복지사 및 보호관찰관을 포함하여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사건의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양식의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청원 양식에서 귀하가 요청하는 특정 기록을 지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정보 요청에는 청소년 법원 파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는 결정과 관련된 심리 날짜를 표시하십시오. 청원의 근거로 항소 법원에 항소 또는 영장 절차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을 요청하는 이유도 설명해야 합니다. 귀하는 설명을 통해 성적 증명서를 포함한 기록들이 귀하가 이의를 제기하는 결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야 합니다 (예: 사건에 대한 심리 후 보고서 또는 법원 명령). 청소년 법원은 귀하가 접근 권한을 갖게 될 기록을 지정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귀하의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법원의 명령은 *Order After Judicial Review on Petition for Access to Juvenile Case File* (청소년 사건 파일 접근 청원에 대한 사법 검토 후 명령)(양식 JV-574)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항소 통지 또는 영장 청원을 제출할 의향 통지를 제출할 때, 법원 명령 사본이 있는 경우 JV-574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기에게 사건 파일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리고 귀하에게 기록이 준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건 파일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청소년 법원의 명령은 항소 또는 청원서 제출의 조건이 아닙니다.

항소 또는 영장 청원을 제출하고 청소년 사건 파일의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지 여부를 고려할 때에는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영장 청원에 대한 시간 범위는 청소년 법원이 귀하에게 청소년 사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항소 통지는 일반적으로 항소할 명령이 주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장 검토의 경우, 영장 청원서 제출 의사 통지는 법원이 항소할 명령이 법원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려진 후, 그 중 먼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빠르면 7일 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소 통지 또는 영장 청원서 제출 의사 통지의 제출 기한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정 8.406, 8.450 및 8.454를 참조하십시오.